

# 「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의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정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해당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3조제3항, 제6조제2항)
-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명, 제1조~제10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수도법」, 「수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수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돗물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구성 기준과 회의 운영 주기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수돗물 수질 관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위원회 구성 시 일반 수요자 등 민간위원 위축이 특정 분야·단체 중심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여, 회의 운영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 또한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회의 결과가 수질 관리 및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